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곽대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5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28.

발의자 : 곽대훈 · 김정재 · 이채익

김도읍 · 최연혜 · 정운천

김승희 · 엄용수 · 조훈현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· 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우선적으로 적용됨.

그럼에도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에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

따라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의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.

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,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,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(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).

법률 제 호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과태료) ① ~ ② (생략)	제45조(과태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u>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<u>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<u>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</u>	<u><삭 제></u>